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김현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821
----------	------

발의연월일 : 2016. 10. 21.

발의자 : 김현아 · 박덕흠 · 정갑윤  
문진국 · 이현승 · 이우현  
신보라 · 주호영 · 오신환  
전희경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그 밖에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또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행정절차는 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되어 있어,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해당 토지등소유자의 사전의견청취방법은 「행정절차법」을 따르게 됨.

그러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가 있으므로,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해제와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없음.

이에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권자가 해당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

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해제를 하는 경우에는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절차와 같이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절차를 거치도록 함으로써 이해당사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3항 신설).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및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 그 의견을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정비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 ② (생 략)</p> <p><u>&lt;신 설&gt;</u></p>	<p>제7조(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 상실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제2항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여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 주민설명회, 주민공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거나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해당 절차를 거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대도시 시장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시장·군수·구청장의 경우에는</p>



법률에 따른 종전의 지정·인가·허가·승인·신고·등록·협의·동의·심사 등(이하 이 조에서 “인가등”이라 한다)이 유효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사업시행자는 종전의 인가등을 변경하여야 한다.

⑤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지정의 효력이 상실되거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